

만월산터널축조공사
민자유치시설사업

변경실시협약



2010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
만월산터널주식회사

변경 실시 협약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와 만월산터널주식회사("사업시행자")는 만월산터널 축조공사 민자유치시설사업의 출자자 및 자본구조변경을 위한 자금 재조달과 관련하여, 2000년 10월 28일자 "만월산터널축조공사 민자유치 시설사업 실시협약"(이하 수정, 변경, 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협약"이라고 한다)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2010년 3 월 29일에 본 변경실시협약("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 ①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는 한, 실시협약에서 정의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 ② 실시협약 제2조 (정의)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8. 보장기준통행료수입 : 부록6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사업연도 추정통행료수입의 73.9%를 말한다."

제2조(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 (1) 실시협약 부록1을 첨부와 같이 변경한다.
-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출자자 및 출자지분율로의 변경과 관련한 자금차입계약 및 자본구조변경으로 인한 자금재조달 이후에는 자본금을 금 7,146백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한다.
- (3) 제2항의 자금재조달로 인한 인천광역시와 사업시행자간의 이익공유는 본 협약에 따른 보장기준통행료수입의 변경으로 모두 반영된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는 그 당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인세율변경에 따른 효과반영)

본 협약에 따라 변경된 보장기준통행료수입은 본 협약 체결시점에서의 법인세법상 법인세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비율이며, 본 협약 체결이후 법인세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 센터에 의뢰하여 제2조에 따른 자금체조달 공유이익 산정시 적용한 재무모델을 근거로, 변경된 법인세율을 반영하여 보장기준통행료수입을 재산정하기로 한다.

제4조(재정지원)

(1) 실시협약 제42조(재정지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정한 재정지원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정지원을 요청하면, 인천광역시는 재정지원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금액을 지원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 차기년도 3월말까지 지급한다.”

(2) 실시협약 제42조(재정지원) 제3항에서, “제2항의 기간(요청일로부터 90일)”을 “제2항의 기간(요청일로부터 60일)”로 변경한다.

제5조(부록의 변경)

실시협약의 부록 중 본 협약에 첨부된 부록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 협약상 첨부된 내용으로 변경되며, 실시협약상 해당 부록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에 첨부된 부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제6조(실시협약의 효력 변경)

실시협약의 내용 중 본 협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본 협약의 내용대로 변경된다. 다만, 본 협약 체결일 현재 종전의 실시협약에 따라 발생한 협약 당사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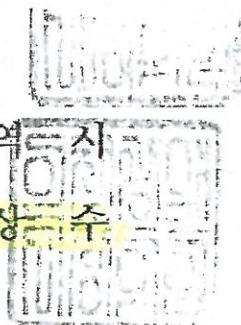
제7조(본 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본 협약에 따라 변경된 보장기준통행료수입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사업시행자는 아래 기재 일자에 본 협약에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0. 3. 29.

인 천 광 역
시 장 안 상 주



만월산터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태 목



부록 1

만월산터널 주식회사 출자자 및 지분율

출 자 자	지 분 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칸서스만월산터널특별자산투자신탁(대출채권)의 신탁업자)	100.00 %
합 계	100.00 %